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학협력 사업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사업단은 산업과 지역에 대한 전문 역량이 융합된 선진형 무역인재를 양성하여 무역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역관련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2. 중화권 지역에 특화된 언어, 상관습, 제도, 진출전략 등을 포함하는 지역특화교육
3. 현장실무 교육 및 컨설팅
4. 협력업체와의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실습 등
5.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재지) 사업단은 계명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부서 및 업무)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개발부, 산학협력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개발부는 교내 교육과정을 활용한 심화교육, 외국어 교육, 자격증 대비 교육, 무역 실무 기본 교육, 국내 유관기관 및 업체 견학, 국내외 전시회 참가업무
2. 산학협력부는 국내외 현장실습, 인사 초청 특강, 사업단 행정지원, 사업단 수출실적관리업무

제5조(조직)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 교육개발책임교수, 산학협력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사업단 사무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책임교수는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면) ① 사업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장이 임면한다.

② 책임교수는 교원으로 겸보하며,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한다.

④ 직원의 자격, 직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사업단장과 각 책임교수가 되며, 위촉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

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으로 한다.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2.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우리 대학교 사업지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금
3. 산업계의 사업지원금
4. 기타 수입

제14조(회계 및 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예산편성)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사업단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서 및 상담자료, 사업장 명부, 개인별 명부 등 관련 정보는 관계법령에 맞추어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단 시설 등의 이용) ① 사업단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